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7. 11. 2.

(개정) 2020. 8. 13.

(개정) 2021. 1. 27.

(개정) 2024. 3. 21.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기본자세)

1. 위원회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

1.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1.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전 2항의 행위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감사위원도 전 2항의 책임이 있으며, 그 결의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감사위원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 구성

제6조(구성)

1.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이하 "위원" 이라고 한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된다.
2.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3.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1.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에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3장 감사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하며,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소집권자)

1.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소집절차)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1일 전까지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및 보고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6)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및 자회사의 조사
- 7)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 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 9) 재무제표를 감사 또는 검토할 외부감사인 선임
- 10)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11)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12)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13) 감사계획 및 결과
- 14)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5)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16)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7) 감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폐
- 18)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9)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체 또는 외부 감사결과
- 2) 이사의 업무 등 보고
- 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5)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 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6)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 7) 관련법령
-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제13조(결의방법)

1.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4조(권한)

1. 업무 감사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영업보고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이사 보고의 수령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자회사에 대한 조사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위원회는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주주총회 소집청구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해임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9.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10. 위원회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기타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15조(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록)

1.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